

전자채권 (사고신고·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

별지와 같이 (사고신고,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이 송달)된 전자채권의 발행인 (이하 “구매기업”이라 함)은 (사고신고, 지급정지가처분명령 송달)의 이유가 전자채권의 지급자금부족을 은폐하여 금융결제원의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전자채권의 채권자(이하 “판매기업”이라 함)가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전자채권금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 전자채권금액 상당액을 예탁함에 있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본 약정서에서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이라 함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은행으로 하여금 지정된 구매기업의 전자채권결제계좌에 대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모든 가처분명령을 말한다.

제 1 조 구매기업은 금_원을 판매기업을 위하여 은행에게 예탁하고, 은행은 이를 판매기업을 위하여 수탁한다.

제 2 조 은행은 다음과 같은 판매기업의 지급청구에 따라 제 1 조의 예탁금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한다

1. 판매기업이 전자채권금액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2. 구매기업이 제기한 전자채권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판매기업이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3.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대한 전자채권금액 지급에 동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 다만, 동 전자채권에 대한 법원의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 3 조 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 1 조의 예탁금을 구매기업에게 지급한다.

1. 판매기업이 제기한 전자채권금액지급청구소송에서 구매기업이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2. 구매기업이 전자채권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3. 당해 전자채권채무로 인하여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별도로 담보공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공탁해당금액. 다만, 구매기업이 당해 전자채권의 지급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담보공탁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4. 당해 전자채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증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만기일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소송계속증임을 입증하는 서면이 은행에 제출되었더라도 동 소송이 만기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각하 또는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6 개월이 되는 때에 지급하고, 만기일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하여 각하 또는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동 사실을 구매기업이 입증한 때에 지급함.

제 4 조 은행이 본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매기업 또는 구매기업에게 제 1 조의 예탁금을 지급한 때에는 은행은 본 약정상의 채무로부터 면책되며 지급후 본 약정서에서 정한 별도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 5 조 은행이 본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매기업 또는 구매기업에게 제 1 조의 예탁금을 지급하기 전에 본 약정서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은행은 예탁금을 변제공탁할 수 있고 변제공탁함으로써 은행은 본 약정상의 채무를 면한다.

제 6 조 제 1 조의 예탁금처리에 관하여 본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금융결제원 “B2B 업무규약 및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조 구매기업과 은행은 본 약정관련 전자채권 채권자인 판매기업의 동의없이 본 약정을 해지하지 못한다.

20 년 월 일

구매기업 성 명 : _____ (인)
 주 소 : _____

 은 행 (주)하나은행 _____ (인)